

과학관의 등록 요건 (제5조 관련)

구분	시설	과학기술자료	전문직원
1. 종합과학관(별표 1의 분류 중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)	가.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(동물원 또는 식물원이 있는 종합과학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분야 전문과학관의 면적을 말한다) 나. 사무실·연구실·자료실·강당 중 1개	자료별로 각각 60점(중) 이상	자료별로 각각 1명 이상
2. 전문과학관(별표 1의 분류 중 한 가지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)	가.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(동물원의 경우에는 사육시설, 진료 및 검역 시설,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하고, 식물원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한다) 나. 사무실·연구실·자료실·강당 중 1개	30점(중) 이상	1명 이상